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799

제출년월일 : 2016.02.22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2016년 기준인건비 인력운용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반영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**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.(안 제2조)**

- **총 수 : 1,890명 → 1,922명(32명 증)**
  - · 집행기관 : 1,860명 → 1,892명(32명 증)
  - · 의회사무국 : 30명(변동없음)

○ **조직개편 반영 종류별·직급별 정원을 조정함.(안 별표3)**

- **정원 조정내역**
  - ‣ 4급 : +1명
    - ◦ 다문화지원본부(4급 사업소) 신설
  - ‣ 5급 : +1명
    - ◦ 다문화정책과, 다문화지원과 2개 과(課) 신설
      - * 외국인주민센터(5급 사업소) 폐지

- **종류별 정원**

구 분		계	정무직	일반직	별정직	연구직	지도직
정원	현 행	1,890	1	1,871	3	4	11
	개정안	1,922	1	1,903	3	4	11
증 감		+32	-	+32	-	-	-

- **직급별 정원**

구 분		계	정무직	일반직					별정직		연구직	지도직
				2급	4급	5급	6급 이하	전 문 경력관	5급 상당	6급상당 이하		
정원	현 행	1,890	1	1	14	109	1,746	1	1	2	4	11
	개정안	1,922	1	1	15	110	1,776	1	1	2	4	11
증 감		+32	-	-	+1	+1	+30	-	-	-	-	-

안전행정국 총무과 출인표 2016-02-19 16:36

○ **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반직 6급 비율을 상향 조정함.(안 별표2)**

구 분		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경력관
비율	현 행	100%	1% 이내	7% 이내	**24% 이내**	34% 이내	26.5% 이내	**7% 이상**	0.5% 이내
	개정안	100%	1% 이내	7% 이내	**24.5% 이내**	34% 이내	26.5% 이내	**6.5% 이상**	0.5% 이내
증 감		-	-	-	**+0.5%**	-	-	**△0.5%**	-

○ **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한시정원 사항을 조정함.(안 제6조, 별표4)**

- 한시정원 12명 → 상시정원 9명

※ 2016년 기준인건비 한시정원 축소 조정(12명 → 9명)

□ 개정조례안 : 붙임1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○ 지방자치법 제112조

○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, 제29조 및 제30조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붙임4

○ 2016년 기준인건비 반영(행정자치부 통보)

○ 소요경비 : **1,586,160천원**(국비보조금 196,146천원)

※ 붙임 비용추계서 참조

□ 사전예고결과(의견없음)

○ 입법예고 : 2016. 1. 27. ~ 2. 16.(20일간)

□ 기타 참고사항

○ 현행조례 : 붙임5

○ 방침결정문 : 붙임6

안전행정국 총무과 홍인표 2016-02-19 14:06

< 붙임 1 >

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1,890명" 을 "1,922명"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"1,860명" 을 "1,892명" 으로 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별표 2,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, 별표 4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총 무 과
입안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총무과장 최 종 은
	계장·팀장 직위·성명	조직교육계장 허 진
	담 당 자 성명·전화	홍 인 표 (행정 3108)

안전행정국 총무과 홍인표 2016-02-19 14:06

<별 지>

[별표 2]

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

1. 일반직 공무원

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 문 경력관
비율	1% 이내	7% 이내	**24.5%** 이내	34% 이내	26.5% 이내	**6.5%** 이상	0.5% 이내

2. 연구직·지도직 공무원

구분	연구직		지도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율	25% 이내	75% 이상	10% 이내	90% 이상

3. 별정직 공무원

구 분	5급 상당	6급 상당	7급 상당
비 율	35% 이내	35% 이내	30% 이상

안전행정국 총무과 홍인표 2016-02-19 14:06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

기관별 / 직급별	총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기관	사업소	구	동
총계	1,922						
정무직 계	1						
시장	1	1					
일반직 계	1,903						
2급	1	1					
3급	-						
4급	15	5	1	2	5	2	
5급	110	38	3	6	20	18	25
6급 이하 소계	1,776	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						
별정직 계	3						
5급 상당	1						
6급 상당 이하 계	2						
연구직 계	4						
연구관	-						
연구사	4						
지도직계	11						
지도관	1			1			
지도사	10						

안전행정국 총무과 홍인표 2016-02-19 14:06

< 붙임 2 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안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"정원"이라 한다)의 총수는 1,890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1,860명 2. (생 략)	**제2조(정원의 총수)** ----------1,922명----------. 1. ---------- : 1,892명 2. (현행과 같음)
제6조(한시정원) 한시정원의 직급 및 존속기한은 별표 4와 같다.	<삭 제>
[별표 2]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1. 일반직 공무원	[별표 2]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1. 일반직 공무원

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 경력관
비율	1% 이내	7% 이내	24% 이내	34% 이내	26.5% 이내	7% 이상	0.5% 이내

2. ~ 3. (생 략)

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 경력관
비율	1% 이내	7% 이내	24.5% 이내	34% 이내	26.5% 이내	6.5% 이상	0.5% 이내

2. ~ 3. (현행과 같음)

안전행정국 총무과 홍인표 2016-02-19 14:06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

직급별 \ 기관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국	직속기관	사업소	구	동
총 계	1,890						
정무직 계	1						
시장	1	1					
일반직 계	1,871						
2급	1	1					
3급	-						
4급	14	5	1	2	4	2	
5급	109	37	3	6	20	18	25
6급이하 소계	1,746	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						
별정직 계	3						
5급 상당	1						
6급상당이하 계	2						
연구직 계	4						
연구관	-						
연구사	4						
지도직계	11						
지도관	1			1			
지도사	10						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

직급별 \ 기관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국	직속기관	사업소	구	동
총 계	1,922						
정무직 계	1						
시장	1	1					
일반직 계	1,903						
2급	1	1					
3급	-						
4급	15	5	1	2	5	2	
5급	110	38	3	6	20	18	25
6급이하 소계	1,776	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						
별정직 계	3						
5급 상당	1						
6급상당이하 계	2						
연구직 계	4						
연구관	-						
연구사	4						
지도직계	11						
지도관	1			1			
지도사	10						

[별표 4]

한시정원 직급 및 존속기한(제6조 관련)

부 서 별	직 종	직 급	정 원	존속기한
계			12명	2016년 3월 31일까지
세월호사고 수습지원단	일반직	5급	1명	
		6급 이하	11명	

<삭 제>

안전행정국 총무과 홍인표 2016-02-19 14:06